

'25년도 화학물질안전원 청년인턴 2차 채용 공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공개모집 하오니, 해당분야의 열정을 갖고 있는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5명)

지원 코드	채용 분야	담당업무	선발 인원 (명)	우대요건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담당자연락처 및 지원서접수 (이메일)
청년 인턴	화학 안전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및 기술분석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분석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출특성 및 감지기 위험 개선 연구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지원(VR, AR 등) - 화학사고 조사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정리	5	화학, 환경, 안전, 보건, 위생성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화학물질안전원 오송 본원 (충북 청주)	043-830-4043 (jja0237@korea.kr)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025.6.25.) 기준 (해당자에 한함)

※ 2025년 청년인턴 채용 현근무자 또는 기용시자(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 중복지원 불가

2 채용조건

가. 근무조건 ※ 겸직은 금지

- **(고용형태)** 청년인턴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3개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 계약기간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채용일정에 따라 채용일(근무시작일)은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월 ~ 금), 주40시간 / 토요일무일, 주휴일
- **(보 수)** 2,096,270원(/월, 세금공제전, 식비포함) *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및 숙소지원 없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환경부 공무원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름

나. 주요 업무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공통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 병행
 -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책현장탐방, 우수인턴 선발 제도 등

3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요건 등

가. 기본요건 <근무시작 예정일(2025. 7. 14. 기준)>

- **(연령)** 근무시작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19세('06.7.14.)~만34세('90.7.15.이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연령 연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포함) 제출 필수**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89.7.15.까지)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88.7.14.까지) / 2년 이상 : 3세 연장('87.7.15.까지)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결격사유)** 「환경부 공무원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자 <**최종(면접)전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가점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5점 또는 10점 추가 가산점 부여)
- ☞ 2개 이상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유형 내 중복가산 불가하고,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1호: 10점, 2호: 5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 5점)

② 장애인: 서류전형 5점 부여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제출

③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서류전형 5점 부여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5점 부여

☞ 해당사실 확인 증명서 제출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응시제한) 환경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23~'25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이상 (타부처 포함) 참여자는 지원 불가

* 합격자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제출 필요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or 부적격** 판단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내용충실도,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등) ② **직무관련 자격**,
③ **사회형평 가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다만,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연령(만 19세~만 34세)만 확인 후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하며, 만약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불합격처리 한다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단체면접(3~5인) 형식이 기본이며,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단, 채용인원이 적은 경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합격자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예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5. 6. 16.(월) ~ '25. 6. 25.(수) (10일)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5. 6. 23.(월) ~ '25. 6. 25.(수) 18:00 限	- 응시원서 등 '9P.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를 작성 후(자필서명) 스캔(PDF)파일을 채용담당자 이메일(ija0237@korea.kr)로 만 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메일까지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6. 27.(금) 예정	-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면접전형	'25. 7. 2.(수)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류합격자 발표시 반드시 확인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불참하여 미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발표	'25. 7. 9.(수) 예정	-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근무개시	'25. 7. 14.(월) 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부서 배치(근무개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등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담당자 이메일(jja0237@korea.kr)로만 접수** (주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기간 : 2025. 6. 23.(월) ~ 2025. 6. 25.(수) 18:00시 까지 **이메일 접수분(담당자 확인 필수)**
 - ※ 접수완료 후 확인메일(접수한 메일로 회신예정이므로 본인메일 사용) 또는 개별 문자 발송 예정
- 응시서류는 해당내용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파일제목은 응시자 이름),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 [예시 : 홍길동(청년인턴)] 로 기재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서식 1, 2)	-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3	동의서 각 1부 (서식 4, 5)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서명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명필수)	
4	확인서 각 1부 (서식 6, 7, 8)	- 결격사유검증 체크리스트(서명필수) - 공정채용 확인서(서명필수)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서명필수) * 연령 연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영역사항포함) 제출 필수	
5	반환청구서 1부 (서식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명필수)	해당 자만 제출
6	기타 자격·경력	- 관련 자격증 사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며 확인불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관련 경력증명서 ※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7	가점 증빙자료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확인 서류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희망기관(지역)등이 적합한 가를 판단하여 근무예정기관(지역)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채용유예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신청(서식9)**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환경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한 경우** 재공고하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예정분야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6개월 이내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청년인턴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공무원 임용이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일체 귀책사유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실시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청년인턴 채용 담당자 연락처(043-830-4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채용담당자 기재	청년인턴	화학안전		* 핸드폰 번호

(아래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구분	목록	서식 번호	제출 여부 체크(✓)
1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서식 1	제출 ☐ 미제출 ☐
2	응시원서	서식 2	제출 ☐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서식 3	제출 ☐ 미제출 ☐
4	동의서(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자격요건 검증)	서식 4, 5	제출 ☐ 미제출 ☐
5	확인서 (결격사유검증 체크리스트, 공정채용확인, 가족채용 제한여부)	서식 6, 7, 8	제출 ☐ 미제출 ☐
6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서식 9	제출 ☐ 미제출 ☐
7	경력,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
8	우대가점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

※ 필수서류(1~5번 항목)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우대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명	(한글) <u>홍길동</u>	(지원코드) 청년인턴	(채용분야) 화학안전
생년월일	<u>1900년 01월 01일</u>				
현주소	<u>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u>				
연락처	(본인휴대폰) <u>010-00000-0000</u>		전자우편	<u>00000@kore.kr</u>	
취업 우대사항	☐ 저소득층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u>취업지원대상자</u>		<u>국가유공자 본인</u>		<u>국가보훈처</u>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학과명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시간)	
학교교육		<u>00000 학과</u>		<u>2~4년</u>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u>수질환경기사</u>	<u>한국산업인력공단</u>	<u>2022.01.01</u>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력	<u>00원</u>	<u>행정사무</u>	<u>2022.01~2022.6</u>	<u>행정업무보조 등</u>	
경험					
*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 원 자 : 홍길동 (서명)

※.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청년인턴 채용분야 : 화학안전
- 성명, 생년월일**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해당란에 ☒ 표시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원 동 기	
경력 및 경험	
기 타 사 항	
2025. 응시자: (서명)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신명조 15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경력 및 경험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채용 및 채용관리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근무경력사항, 자격, 면허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논문, 수상실적,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절차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화학물질안전원 청년인턴 지원자 성명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명 :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성명 :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서약자 :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유의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